

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제출 : 2003. 12. 1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59호
- 라. 상정일자 : 2003. 12. 6.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예산편성지침을 정하고 있으며, 당직수당지급에 관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함(안 제7조 제4항).
- 조례의 시행일은 2004년 1월 1일로 함(안 부칙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중 현재

“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”
라고 된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,

제4항에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
삽입하는 것임.

- 수당의 금액은 제5항으로 변경된 종전 제4항에 의거 규칙으로
정하게 되며,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
없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생략)

5. 토론요지(생략)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-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
으로서 조례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두고
시행규칙에서 당직수당의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으며
-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, 상위 법령에
저촉되지 아니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
- 읍·면 단위 당직근무자의 수당 현실화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
있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(생략)